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안 번호	1342
----------	------

제출년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윤범로 의원, 양승모의원,
이호영 의원, 이종구의원

1. 제안이유

- 중앙부처 규제완화과제 중 개인택시 및 1대 보유 개별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의무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면제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1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제1항 별표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상기 규칙에 근거하여 개인택시 및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최저 보유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신설(안 제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함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신설(안 제3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다. 의무 등 신설(안 제4조)

- 안 제3조에 의한 차고지 면제대상은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1. 11. 4 ~ 11. 24)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의무 등) 제3조에 따른 차고지 면제대상은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36㎡ ~ 40㎡
2) 중형	23㎡ ~ 26㎡
3) 소형	15㎡ ~ 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13㎡ ~ 15㎡
2) 개인택시	10㎡ ~ 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처분기준)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0.12.29>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4.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